

2021년 1월 15일 발행인·편집인 : 이윤섭·김이강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2129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호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 1. 12.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광주광역시

3. 문화예술대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발굴하고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개정

3. 주요내용

- 예술대상 명칭을 문화예술대상으로 변경(안 제2조, 시행규칙 안 제2조, 제9조)
- 학술대상 수상범위에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사항 추가(시행규칙 안 2조)
-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사전검증 관련 규정 추가(시행규칙 안 제11조)
- 분과위원회 심사 시,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방식 반영(시행규칙 안 제11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상종류 및 인원) ①시민대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략) 3. 예술대상 4. 5. (생략) ② (생략)	제2조(시상종류 및 인원) ①----- ----- 1. 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대상 4.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규칙 제 호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참조: 자치행정과장,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062-613-2918, FAX 062-613-2949, E-mail: cjy1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술대상”을 “문화예술대상”으로 한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제출서식

- 2. 학술대상
  - 가.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교육분야에 괄목할 만한 연구실적 또는 새로운 논문발표로 학술에 기여한 자
  - 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 등 학술연구를 통해 공익적 가치 실현에 공헌한 자

제9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문화예술대상분과위원회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분과위원회 심사 시 심사기준표에 따른 개별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최소 기준점수 미만인 후보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심사기준표와 최소 기준점수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위원회 심사 전에 각 부문에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5. 기타사항

- 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사회제난과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2장 안전감찰 활동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예방 안전감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감안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실행을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 ① 사회제난과장은 안전감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할 때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감찰반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 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를 위해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의무 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하여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에 앞서,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안전감찰관은 실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별

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안전감찰관은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할 수 있다.
  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보고사항)** ① 안전감찰관은 실시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감찰보고서 :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
  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
  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4. 제3호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
  5.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자의 변명 또는 반론
  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제11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허위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처분기준)** 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요구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3. 시정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주의 요구 :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개선 요구 :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통보 :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현지조치 요구 :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9. 고발 :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경우 「광주광역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과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전감찰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심의)**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안전실장을 대표로 하는 회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통보 등 관계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은 처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체는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필요시 재난안전분야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대표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시장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을 따른다.

**제15조(제심의신청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심의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심의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심의신청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심의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제심의)** ①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제심의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심의의에 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재난안전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과 4에 따라 안전감찰대상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될 경우, 시장은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제9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

- 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회와 관련하여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의 효력)** 시장은 재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도록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9조(이행실태)** 재난안전법 제77조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등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유지)**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장 안전감찰 역량강화

**제21조(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시장은 사회재난과장이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회재난과장은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역량 강화)** ① 시장은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에 대하여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법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특정업무경비 지급)** 안전감찰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제24조(재검토기한)** 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3호

#### 광주광역시립예술평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립예술평단원 복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 및 관련 단체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 사유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 중 일부 문구 수정을 위해 광주광역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등) 시행에 따라 취업규칙 의무 반영으로 규정 안 제30조(직장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제31조(직장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신설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근거 조항 변경
- 현행 규정 중 일부 문구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4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회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 광주광역시 북부 복문대로60, 광주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과
- 2) 팩스 : 062-613-8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전화: 062-613-83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훈령 제 호

광주광역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안

광주광역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무에 관하여” 를 “복무에”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를 “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 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 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를 “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 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비치하되” 를 “갖춰 두되” 로 한다.

제29조 중 “비치하고” 를 “갖춰 두고” 로 한다.

제30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총전의 제30조) 중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를 “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 로 하며,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회관과 단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단원에게 신체적·정신

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13조 제4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립예술단 단원(예술감독 또는 지휘자를 포함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복무에 ----- -----.
제9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예능단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사무국장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며 예술감독 등 계약직은 별도 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따르되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예능 상임단원과 같다.	제9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① ----- ----- -----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평가) 예술감독 또는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필요한 평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4조(특별휴가 및 대체휴무) ① 예술감독 또는 사무국장은 단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특별휴가 및 대체휴무) ① ----- -----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근무상황부 비치) 각 예술단체에서는 단원의 출근 등 근무상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되, 각 예술감독 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근무상황 변경사항 발생 당일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근무상황부 비치) ----- ----- 갖춰 두되, ----- -----.
제29조(인사기록카드) 단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인사기록카드) ----- ----- 갖춰 두고 ----- -----.
<신설>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회관과 단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단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3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

<p>제30조(준용) 위 복부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 복부조례」를 준용한다.</p>	<p>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p> <p>제32조(준용) ----- -----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부조례」-----.</p>
---	--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9호**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호선, 완충녹지 455호)사업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15.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자**

가.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산 81-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호선, 완충녹지 455호) 사업  
나. 명 칭 : 증외공원 모아미래도 아파트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조성공사

**3. 사업규모**

노 선 명	총 규 모	금회시행	비 고
중로1-9호선	B=20-24.5m, L=1,937m	B=4.5m, L=108m A=456.0㎡	광고 31 ' 90.3.28
완충녹지 455호	A=2,820㎡	A=2,820㎡	복구청고시 185 ' 20.10.15.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54-27  
나. 성 명 : 광주운암동지역주택조합 대표 이명진

**5. 사업시행기간 : 2021. 1. 15.(착수일) ~ 2023. 1. 14.(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관련조서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24,018.0	3,276.0					
1	운암동	산81-1	일	16,364.0	98.0	최남두 최병규 최남현	광주시 서구 운암동 산81-1 광주시 서구 연제동107 광주 북구 운암동425-2			완충녹지 455호
2	운암동	225-7	일	990.0	16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완충녹지 455호
3	운암동	217-7	답	255.0	95.0	김용재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91 (배곡동)			완충녹지 455호
4	운암동	217-13	답	1,283.0	788.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완충녹지 455호
5	운암동	218-13	답	895.0	508.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완충녹지 455호

2021. 1. 15.

광 주 광 역 시 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6	운암동	220-4	답	676.0	377.0	광주운암동지역주택조합 김거중 김후중 김익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54-27. (운암동 102호) 광주광역시 북구 연양로95번길 9-5,401호(양산동) 광주 북구 일곡동 819-1 일곡3차 현대아파트 302동 702호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로 100. 104동 703호 (일곡동, 일곡1차현대아파트)	완충녹지 455호
7	운암동	221-3	답	476.0	376.0	노명숙	광주 북구 운암동 294. 운암아파트335-406	완충녹지 455호
8	운암동	1181-84	구	777.0	97.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완충녹지 455호
9	운암동	235-18	답	315.0	315.0	김건중 김효숙	원주시 단계동 792 단계아파트 7동 402호 울산시 중구 유곡동 75-18	완충녹지 455호
10	운암동	231-4	답	473.0	24.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중로1-9
11	운암동	231	답	523.0	8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중로1-9
12	운암동	232-7	답	28.0	24.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중로1-9
13	운암동	233-11	답	45.0	2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중로1-9
14	운암동	233-15	답	227.0	99.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중로1-9
15	운암동	233-7	답	226.0	130.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중로1-9
16	운암동	233-14	답	205.0	4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중로1-9
17	운암동	233-5	답	205.0	16.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중로1-9
18	운암동	228-5	도	55.0	2.0	공	광주광역시	중로1-9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13호**

**광주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광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운동장(염주종합운동장))의 축구전용구장 관람석, 화장실 및 매점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체육진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15.

광 주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조서**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9	종합운동장	운동장	서구 풍암동 산217-1번지 일원	서구 풍암동 423-2 번지 일원	470,278	증)15,700.3	485,978.3	건고201 '86.5.7 광고106 '89.10.21 광고 39 '99.4.15 광고 86 '99.7.7 광고124 '00.10.28 광고108 '04.11.1 광고171 '16.9.15 광고313 '19.12.16

나.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7호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위치 : 서구 풍암동 신217-1번지일원 → 서구 풍암동 423-2번지 일원	○ 현 지적현황을 반영하여 위치 변경										
		○면적 :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4">면적(㎡)</th> </tr> <tr> <th>기정</th> <th>변경</th> <th>증·감</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470,278</td> <td>471,833</td> <td>485,978.3</td> <td>증15,703</td> </tr> </tbody> </table>	면적(㎡)				기정	변경	증·감	비고	470,278	471,833	485,978.3
면적(㎡)													
기정	변경	증·감	비고										
470,278	471,833	485,978.3	증15,70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4호(2021.1.4)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831-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8차)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불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 주택과 및 부동산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1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산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831-1번지 일원	117,678	감) 59.5	117,618.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사유
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831-1 일원	117,618.5 (감 59.5)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7,678	감) 59.5	117,618.5	100.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117,678	감) 59.5	117,618.5	100.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구분	용도지구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변경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9.5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감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정	중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유형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31	15	국지도로	2,400(265)	산정동대1-19	산정동광로7	일반도로	광고122 '98. 9.24	
기정	중로	3	305	12	국지도로	238	광산구산정동208-7번지	중로2-231	일반도로	-	

주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2.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변경 조서  
가. 토지별 세부조서

연번	세부시설명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합계	471,833.0	증)14,145.3	485,978.3	100.0	
1	실내체육관	16,000.0	-	16,000.0	3.3	
2	축구장	19,401.0	-	19,401.0	4.0	
3	승마장	26,084.0	-	26,084.0	5.4	
4	수영장	8,981.0	-	8,981.0	1.9	
5	종합운동장	78,837.0	-	78,837.0	16.2	
6	테니스코트	9,000.0	-	9,000.0	1.9	
7	도로	69,958.0	-	69,958.0	14.4	
8	주차장	77,713.0	증)14,145.3	91,858.3	18.9	일반광장의 주차장 면적 중복결정
9	녹지	66,733.0	-	66,733.0	13.7	
10	광장	5,915.0	-	5,915.0	1.2	
11	골프연습장	42,207.0	-	42,207.0	8.7	
12	올림픽생활관	3,600.0	-	3,600.0	0.7	
13	실내빙상장	9,145.0	-	9,145.0	1.9	
14	검도장	1,576.0	-	1,576.0	0.3	
15	씨름장	611.0	-	611.0	0.1	
16	보조경기장	21,887.0	-	21,887.0	4.5	
17	다목적체육관	10,140.0	-	10,140.0	2.1	
18	역도장	398.0	-	398.0	0.1	
19	종합체육관	2,043.0	-	2,043.0	0.4	
20	장애인체육센터	1,604.0	-	1,604.0	0.3	

나. 건축물별 세부조서

구분	세부시설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동	92,860.87	증)3,340.00	96,200.87	221,786.14	증)3,340.00	225,126.14	
1	업무실내체육관	6,523.29	-	6,523.29	22,588.28	-	22,588.28	
2	축구장	99.00	-	99.00	99.00	-	99.00	
3	승마장	2,580.36	-	2,580.36	2,677.36	-	2,677.36	
4	실내수영장	5,847.65	-	5,847.65	8,741.11	-	8,741.11	
5	월드컵경기장	52,724.48	-	52,724.48	135,152.75	-	135,152.75	
6	전천후테니스장	3,420.91	-	3,420.91	3,714.67	-	3,714.67	
7	파크골프장 화장실	128.41	-	128.41	128.41	-	128.41	
8	테니스장화장실	22.50	-	22.50	22.50	-	22.50	
9	골프연습장	697.28	-	697.28	1,571.65	-	1,571.65	
10	모아연습장	2,623.45	-	2,623.45	9,861.60	-	9,861.60	
11	국민생활관	1,895.42	-	1,895.42	8,615.26	-	8,615.26	
12	실내빙상장	3,739.80	-	3,739.80	4,117.20	-	4,117.20	
13	검도장	648.09	-	648.09	794.61	-	794.61	
14	다목적체육관	3,957.25	-	3,957.25	5,611.87	-	5,611.87	
15	역도훈련장	397.68	-	397.68	397.68	-	397.68	
16	종합체육회관	2,737.44	-	2,737.44	9,058.70	-	9,058.70	
17	장애인체육센터	2,115.62	-	2,115.62	3,995.69	-	3,995.69	
18	씨름장	234.47	-	234.47	234.47	-	234.47	
19	분부석	2,264.53	-	2,264.53	4,232.69	-	4,232.69	
20	복문 매표소	29.80	-	29.80	13.50	-	13.50	
21	동문 매표소	29.80	-	29.80	13.50	-	13.50	
22	역도보조훈련장	143.64	-	143.64	143.64	-	143.64	
23	화장실 및 매점	-	증)340.00	340.00	-	증)340.00	340.00	2개소, 신축
24	축구전용구장 관람석	-	증)3,000.00	3,000.00	-	증)3,000.00	3,000.00	신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	A-1BL	광산구 산정동 831-1번지 일원	110,616	감) 59.5	110,556.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축물·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BL	A-1BL	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용적률	○ 60% 이하
		건축률	○ 2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관상형태배치 권장 / 채광 고려 배치
		형태	○ 투시형당장 또는 생활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권장 ○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형적인 형태 권장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BL	A-1BL	차량동선	○ 대상지 남측의 기 조성중인 단지와 연결하고, 단지내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동과 연계하여 계획
		보행동선	○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고 단지내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행로 계획
		주차장	○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되되 지하주차비율을 70%이상 확보
		조경	○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5장 제27조」에 맞도록 대지면적의 15%이상 확보 하도록 계획

7. 기부채납계획(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의 기부채납은 도로 2개소의 일부구간을 개설할 계획임
- 공공시설(기부채납)의 면적은 7,062㎡로 계획함
- 기부채납 인정면적 : 6,245㎡
  - 기부채납하는 도로 중 무상양여 국·공유지(817㎡)를 제외한 면적
  - 도로 개설면적 : 6,245㎡

< 기부채납 조서 >

구분	시설명	폭원 및 연장		기부채납 확보면적(㎡)	면적(㎡)		기부채납 인정면적(㎡)	비고
		폭원(㎡)	연장(㎡)		사유지	국·공유지		
도로	중로3-305	12	238	4,210 (9필지)	4,210 (9필지)	-	4,210 (9필지)	도로개설 기부채납
	중로2-231	15	265	2,852 (9필지)	2,035 (6필지)	817 (3필지)	2,035 (8필지)	일부구간개설 기부채납
합계	-	-	503	7,062 (18필지)	6,245 (15필지)	817 (3필지)	6,245 (15필지)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행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8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 광산구 우산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 공사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1. 1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67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칭 : 광산구 우산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노선명	연장(㎡)	폭원(㎡)	시점	종점	금회시행				사용형태
					연장(㎡)	폭원(㎡)	시점	종점	
중로 2-32호선	1,267	15-18	우산동 중2-233	우산동 대1-8	300	3-15	우산동 중2-233	우산동 중1-241	일반도로
중로 2-233호선	1,050	15	우산동 중1-28	우산동 중2-27	198	15	광로 1-7	우산동 중2-32	일반도로

- 면적 : (당초)5,977㎡ → (변경)5,977.1㎡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주소 : (당초)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76번길 1, 5층 (변경)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32, 3층 302호
- 성명 :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대표 강수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2018. 7. 1.
- 준공예정 : 2021.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토지권입조서
- (당초)

일련번호	주소	지번지목	면적(㎡)	공부상권면적(㎡)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관계인		
									주소	권리관계	
1	우산동 672-1	담	2,237	16	우산동 지역주택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76번길 1 (양촌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76번길 1 (양촌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76번길 1 (양촌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76번길 1 (양촌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76번길 1 (양촌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76번길 1 (양촌동)
						괴산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6 19	괴산읍	근저당		
						남보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보은군 삼송면 원남로 31-4	원남면	근저당		
						보은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742	보은읍	근저당		
						오송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가로수로 196	오송읍	근저당		
						영해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예주시장길 26	영해면	근저당		
						화원농업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75	화원읍	근저당		
						남면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라길 101	남면	근저당		
						오창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팔결로 699	오창읍	근저당		
						장수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164	장수읍	근저당		
						군자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중앙로 33 (철성지점)	연풍면	근저당		
						단양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은달평길1로 1 (가곡지점)	단양읍	근저당		
						백산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학당길 26	백산면	근저당		
						진봉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진봉로 495	진봉면	근저당		
						황토농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정음시 고부면 영주로 557	고부면	근저당		
부귀농업협동조합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298	부귀면	근저당								
북영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길 71	병곡면	근저당								













2) 공간시설(변경)

○ 녹지(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91	녹지	완충녹지	광산구 수완동 888동 일원	1,656.0	증)354	2,010	신창지구 외 354㎡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1	녹지(완충녹지)	· 당초 면적 : 1,656.0㎡ · 변경 면적 : 2,010.0㎡ (증) 면적 : 354㎡	· 폭원 10m 미확보 부분의 완충녹지 폭원 확보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00	문화시설	다목적 문화시설	수완동 893 일원	-	증)2,634	2,634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00	문화시설	· 신설 : 2,634㎡	· 기반시설(방송·통신시설) 정비(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제척)에 따른 기반시설 기부채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수완동, 신가동 일원	계	1,244,671.3	감)6,034.2	1,238,637.1
		1단계	1,137,217.2	-	1,137,217.2
		2단계	107,454.1	감)6,034.2	101,419.9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 면적변경 - 당 초) 1,244,671.3㎡ - 변 경) 1,238,637.1㎡ - 증 감) (감)6,034.2㎡	· 방송통신시설 기능 상실로 인한 시설제거에 따른 구역제척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용도지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변경	변경후	구성비 (%)
	기 정	1단계		2단계			
합 계	1,244,671.3	1,137,217.2	107,454.1	감)6,034.2	1,238,637.1	100.0	
주거지역	소 계	1,090,422.5	1,012,266.1	78,156.4	감)6,034.2	1,084,388.3	87.5
	제1종일반주거지역	47,943.1	45,650.1	2,293.0	-	47,943.1	3.9
	제2종일반주거지역	379,436.1	360,605.3	18,830.8	-	379,436.1	30.6
	제3종일반주거지역	652,610.7	601,582.5	51,028.2	감)6,034.2	646,576.5	52.2
	준 주 거	10,432.6	4,428.2	6,004.4	-	10,432.6	0.8
상업지역	소 계	48,970.2	48,970.2	-	-	48,970.2	4.0
	일반상업지역	48,970.2	48,970.2	-	-	48,970.2	4.0
녹지지역	소 계	105,278.6	75,980.9	29,297.7	-	105,278.6	8.5
	자연녹지지역	105,278.6	75,980.9	29,297.7	-	105,278.6	8.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3종일반주거지역) - 당 초) 652,610.7㎡ - 변 경) 646,576.5㎡ - 증 감) (감)6,034.2㎡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제척

2) 용도지구(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유통·공급시설(변경)

가) 방송시설(변경)

○ 방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계		-	6,034.2	감)6,034.2	-
	방송시설 6	방송시설	수완동 893 일원	6,034.2	감)6,034.2	-

○ 방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방송시설 6	방송시설	· 도시계획시설해제 - 면적) 6,034.2㎡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능 상실한 방송·통신시설 해제

나)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구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1) 단독주택(변경없음)

2) 공동주택(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5) 상업용지(변경없음)

6) 기타시설 및 공공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방송시설 6	방송시설	수완동 893 일원	6,034.2	감)6,034.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교육시설, 종교시설, 가스공급시설, 주차장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변경)

1) 건축물에 용도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

가) 단독주택(변경없음)

나) 공동주택(변경없음)

(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라)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마) 상업용지(변경없음)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기 정】

구 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고
교육시설	47,458.3	60%	200%	-	5	
종교시설	7,315.4	50%	250%	-	7	
방송시설	6,034.2	50%	250%	-	5	
주차장	7,870.9	광주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르며, 각 층별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허용된 용도시설은 일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함.				

【변 경】

구 분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고
교육시설	47,458.3	60%	200%	-	5	
종교시설	7,315.4	50%	250%	-	7	
주차장	7,870.9	광주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따르며, 각 층별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허용된 용도시설은 일방향으로 배치하여야 함.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80호

광주도시계획시설(대로2-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 **정정** 공고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1-27(2021. 1. 11.)호로 공고한 광주 도시계획시설(대로2-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 내용 중 편입 토지 착오 기재에 대해 **정정** 공고합니다.

2021. 1. 15.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산43-17 ~ 북구 용전동 1222-16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7호선) 사업  
○ 사업의 명칭 : 광주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노 선 명	총 규 모	급회시행	비 고
대로 2-7호선	L=7,248m, B=20~30m	L=3,032m, B=20~30m	4-6차로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성 명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2017. 7. 1.(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당초)2020. 12. 31. → **(변경)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관련조서(정정) : 불입

○ 토지조서 불입, 관계 도면은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열람기간

○ 2021. 1. 11. ~ 2021. 1. 25.(15일간)

8.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1과(☎062-613-6883)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제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조서(정정)

연번	동명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용두	산43-20	임	414	5.0	광주광역시					
2	용두	산38-25	임	23	5.0	광주광역시					
3	용두	산38-9	임	1,699	1,699.0	광주광역시					
4	용두	산43-17	임	1,230	594.0	광주광역시					
5	용두	267-8	전	653	653.0	광주광역시					
6	용두	산38-3	임	931	931.0	광주광역시					
7	용두	267-10	전	772	772.0	광주광역시					
8	용두	산38-12	임	137	137.0	광주광역시					
9	용두	292-53	도	271	233.0	광주광역시					
10	용두	267-53	대	5	5.0	광주광역시					
11	용두	267-50	전	3	3.0	광주광역시					
12	본촌	산107-8	임	405	405.0	광주광역시					
13	본촌	산107-6	임	306	156.0	광주광역시					
14	본촌	산107-16	임	27	27.0	광주광역시					
15	본촌	산107-15	임	624	199.0	광주광역시					
16	본촌	673-34	도	11	11.0	광주광역시					

연번	동명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7	본촌	산107-7	임	579	93.0	광주광역시					
18	본촌	771-20	담	410	244.0	광주광역시					
19	본촌	771-22	담	153	138.0	광주광역시					
20	본촌	771-19	담	305	305.0	광주광역시					
21	본촌	771-6	담	922	755.0	광주광역시					
22	본촌	774-55	구	151	151.0	농림축산식품부					
23	본촌	770-20	담	1,153	1,153.0	광주광역시					
24	본촌	770-22	담	292	292.0	광주광역시					
25	본촌	770-19	담	1,138	1,138.0	광주광역시					
26	본촌	770-37	담	2	2.0	광주광역시					
27	본촌	770-21	담	335	335.0	광주광역시					
28	본촌	774-57	구	962	816.0	농림축산식품부					
29	본촌	769-13	담	1,343	1,145.0	광주광역시					
30	본촌	646-8	담	84	84.0	광주광역시					
31	본촌	655-6	담	131	131.0	광주광역시					
32	본촌	646-7	대	413	436.0	광주광역시					
33	본촌	645-2	담	28	113.0	광주광역시					
34	본촌	772-3	담	353	188.0	광주광역시					
35	본촌	774-36	구	528	419.0	농림축산식품부					
36	본촌	768-9	담	888	580.0	광주광역시					
37	본촌	773-4	담	728	485.0	광주광역시					
38	본촌	767-12	담	579	847.0	광주광역시					
39	본촌	360-9	도	21	21.0	광주광역시 북구					
40	본촌	360-5	대	122	314.0	광주광역시					
41	본촌	360-12	대	63	63.0	광주광역시					
42	본촌	360-11	대	139	179.0	광주광역시					
43	본촌	360-8	도	40	40.0	광주광역시 북구					
44	본촌	360-1	대	370	370.0	광주광역시					
45	본촌	767-13	담	559	708.0	광주광역시					
46	본촌	360-10	대	33	33.0	광주광역시					
47	본촌	377-4	대	81	1,674.0	광주광역시					
48	본촌	767-8	담	304	304.0	광주광역시					
49	본촌	767-9	담	496	496.0	광주광역시					
50	본촌	767-14	담	137	137.0	광주광역시					
51	본촌	774-35	구	102	102.0	농림축산식품부					
52	본촌	774-39	도	75	75.0	농림축산식품부					
53	본촌	766-17	담	250	250.0	광주광역시					
54	본촌	766-14	담	709	709.0	광주광역시					
55	본촌	766-12	담	539	539.0	광주광역시					
56	본촌	766-13	담	674	721.0	광주광역시					
57	본촌	766-9	담	350	350.0	광주광역시					
58	본촌	766-16	담	314	378.0	광주광역시					
59	본촌	774-34	구	184	184.0	농림축산식품부					
60	본촌	766-15	담	166	166.0	광주광역시					
61	본촌	765-7	담	696	696.0	광주광역시					
62	본촌	765-8	담	462	462.0	광주광역시					



연번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3	본촌	765-4	답	896	896.0	광주광역시					
64	본촌	400-3	도	12	12.0	광주광역시					
65	본촌	719-7	구	4	4.0	농림축산식품부					
66	본촌	765-6	답	332	332.0	광주광역시					
67	본촌	765-3	답	198	198.0	광주광역시					
68	본촌	774-30	구	1,042	1,042.0	농림축산식품부					
69	본촌	718	도	58	5.0	국토교통부					
70	본촌	450-14	임	2	2.0	광주광역시					
71	본촌	450-3	도	79	75.0	광주광역시					
72	본촌	774-37	도	61	61.0	농림축산식품부					
73	본촌	764-8	답	44	44.0	광주광역시					
74	본촌	450-11	잡	70	70.0	광주광역시					
75	본촌	764-7	답	346	346.0	광주광역시					
76	본촌	764-4	답	393	393.0	광주광역시					
77	본촌	718-1	도	521	521.0	국토교통부					
78	본촌	719-6	구	187	187.0	농림축산식품부					
79	본촌	449-3	도	202	202.0	광주광역시					
80	본촌	449-5	전	1,053	1,053.0	광주광역시					
81	본촌	764-6	답	7	7.0	광주광역시					
82	본촌	449-4	구	63	63.0	광주광역시					
83	본촌	717	도	767	767.0	국토교통부					
84	본촌	451-1	답	370	370.0	광주광역시					
85	본촌	764-5	답	4	4.0	광주광역시					
86	본촌	758-15	답	20	20.0	광주광역시					
87	본촌	447-2	도	132	132.0	광주광역시					
88	본촌	448-2	도	50	50.0	광주광역시					
89	본촌	758-17	답	84	84.0	광주광역시					
90	본촌	448-3	구	96	96.0	광주광역시					
91	본촌	448-1	답	350	350.0	광주광역시					
92	본촌	459-13	학	1,381	1,381.0	광주광역시					
93	본촌	462-3	도	33	33.0	광주광역시					
94	본촌	463-2	도	50	50.0	광주광역시					
연번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5	본촌	758-16	답	92	92.0	광주광역시					
96	본촌	462-4	구	145	154.0	광주광역시					
97	본촌	464-2	도	20	20.0	광주광역시					
98	본촌	462-2	도	36	36.0	광주광역시					
99	본촌	465-2	도	76	76.0	광주광역시					
100	본촌	759-17	답	12	12.0	광주광역시					
101	본촌	712-4	대	3	3.0	국토교통부					
102	본촌	759-16	답	24	24.0	광주광역시					
103	본촌	712-3	구	192	192.0	국토교통부					
104	본촌	480-3	잡	757	757.0	광주광역시					
105	본촌	480-2	도	231	231.0	광주광역시					
106	본촌	482-5	도	23	23.0	광주광역시					

107	본촌	482-4	도	13	13.0	광주광역시					
108	본촌	713-4	도	553	553.0	국토교통부					
109	본촌	484-3	전	697	697.0	광주광역시					
110	본촌	482-3	도	69	69.0	광주광역시					
111	본촌	480-4	잡	124	124.0	광주광역시					
112	본촌	774-42	구	82	82.0	농림축산식품부					
113	본촌	481-4	도	26	26.0	광주광역시					
114	본촌	487-4	도	23	23.0	광주광역시					
115	본촌	760-12	답	171	171.0	광주광역시					
116	본촌	760-16	답	272	272.0	광주광역시					
117	본촌	774-7	도	2,626	2,222.0	농림축산식품부					
118	본촌	760-17	답	326	326.0	광주광역시					
119	본촌	763-7	답	327	327.0	광주광역시					
120	본촌	760-18	답	266	266.0	광주광역시					
121	본촌	763-6	답	259	259.0	광주광역시					
122	본촌	774-59	구	723	23.0	농림축산식품부					
123	본촌	761-8	전	346	346.0	광주광역시					
124	본촌	761-7	전	75	75.0	광주광역시					
125	본촌	713-2	도	595	10.0	국토교통부					
126	본촌	487-5	구	10	10.0	광주광역시					
연번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27	본촌	487-6	구	5	5.0	광주광역시					
128	본촌	763-9	답	163	163.0	광주광역시					
129	본촌	763-3	답	466	85.0	박상근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4번길 22-201동 1902호 (양산동, 지에스그린자이3차아파트)	하이트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13	근저당 지상권	
130	본촌	763-8	답	163	163.0	광주광역시					
131	본촌	774-6	구	16	16.0	농림축산식품부					
132	본촌	774-40	구	27	27.0	농림축산식품부					
133	본촌	762-17	답	420	420.0	심봉섭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54번길 50, 205동 2502호 (울암동, 벽산블루밍베가세리아아파트)	광주문화신문 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문신로 38 (문흥동)	근저당 지상권	
134	본촌	762-16	도	75	75.0	배재만 외 2인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23번길 14-27(계림동)				
135	본촌	762-15	답	393	393.0	배재만 외 2인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23번길 14-27(계림동)				
136	본촌	762-12	답	536	536.0	김성중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683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 2가)	근저당 지상권	
137	본촌	762-18	답	136	136.0	김성중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683	광주축산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산수로 313 (효천행암지점)	근저당 지상권	
138	지야	809-61	구	104	104.0	농림축산식품부					
139	지야	809-11	도	2,030	1,055.0	농림축산식품부					
140	지야	800-2	답	664	664.0	서만기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12, 101동 1103호 (두암동, 라인)				

141	지야	800-20	답	172	172.0	서판기	동산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 로 112, 101 동1103호 (두암동, 라 인 동산아파트)												
142	지야	787-21	답	37	37.0	김영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234-6	셋방전지 (주)	서울특 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8	근저당									
143	지야	800-21	답	427	427.0	박경자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370(양산동)	보광주농조 합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2(본 촌동)	근저당									
144 (당초) <b>144 (경정)</b>	지야	800-1	답	710	710.0	최영아 외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 계동 757-6 101-1004												
145	지야	809-60	구	100	100.0	농림축산식 품부													
146	지야	809-59	구	552	552.0	농림축산식 품부													
147	지야	809-58	구	60	60.0	농림축산식 품부													
<b>연번</b>	<b>동명</b>	<b>지번</b>	<b>지목</b>	<b>지적 (㎡)</b>	<b>면적 (㎡)</b>	<b>소유자</b>		<b>이해관계인</b>			<b>비고</b>								
						<b>성명</b>	<b>주소</b>	<b>성명</b>	<b>주소</b>	<b>권리관계</b>									
148	지야	180-11	답	13	13.0	채무부													
149	지야	180-10	도	99	99.0	국토교통부													
150	지야	180-8	대	119	119.0	채무부													
151	지야	179-1	답	36	36.0	서판기 외 인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 동 228												
152	지야	180-1	답	23	23.0	채무부													
153	지야	801-22	답	623	623.0	이원철 외 인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택지로 136, 101동 903호 (용두동, 양 산 진아리채)												
154	지야	809-4	도	25,238	4,860.0	농림축산식 품부													
155	지야	801-21	답	814	814.0	광주광역시													
156	지야	801-20	답	986	986.0	광주광역시													
157	지야	802-30	답	314	314.0	광주광역시													
158	지야	802-27	도	106	106.0	광주광역시													
159	지야	802-33	답	106	106.0	광주광역시													
160	지야	802-32	도	141	141.0	광주광역시													
161	지야	802-31	답	161	161.0	광주광역시													
162	지야	802-34	답	411	411.0	광주광역시													
163	지야	802-37	답	551	551.0	광주광역시													
164	지야	803-30	답	982	982.0	광주광역시													
165	지야	803-29	답	799	799.0	광주광역시													
166	지야	363-6	도	17	3.0	광주광역시 교육감													
167	지야	363-8	도	3	3.0	광주광역시 교육감													
168	지야	737-16	구	2,579	4.0	농림축산식 품부													
169	지야	803-28	대	792	792.0	문창호 외 4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 말로 93, 101동 1101 호 (구로동, 신 도림태형타 운)												
170	지야	799-2	답	251	141.0	정환모	광주 북구 지야동 275												
171	지야	799-3	답	572	572.0	이명숙 외 4인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 음대로 1042번길 14-1, 103동 201호 (신용동, 침 단 자이1단지)												
172	지야	809-65	구	62	62.0	농림축산식 품부													
173	지야	809-63	구	81	81.0	농림축산식 품부													
<b>연번</b>	<b>동명</b>	<b>지번</b>	<b>지목</b>	<b>지적 (㎡)</b>	<b>면적 (㎡)</b>	<b>소유자</b>		<b>이해관계인</b>			<b>비고</b>								
						<b>성명</b>	<b>주소</b>	<b>성명</b>	<b>주소</b>	<b>권리관계</b>									

174	지야	798-10	답	1,766	1,766.0	광주광역시					
175	지야	798-8	답	1,166	1,166.0	광주광역시					
176	지야	180-13	대	4	4.0	광주광역시					
177	지야	180-12	도	126	126.0	국토교통부					
178	지야	180-2	답	27	8.0	기획재정부					
179	지야	182-3	도	13	13.0	광주광역시					
180	지야	804-28	답	2	2.0	광주광역시					
181	지야	804-27	답	1,172	1,172.0	광주광역시					
182	지야	798-9	답	107	107.0	광주광역시					
183	지야	809-8	구	639	150.0	농림축산식 품부					
184	지야	797-16	답	2,039	2,039.0	광주광역시					
185	지야	797-18	답	501	501.0	광주광역시					
186	지야	797-15	답	828	828.0	광주광역시					
187	지야	809-56	구	128	128.0	농림축산식 품부					
188	지야	796-15	답	35	35.0	광주광역시					
189	지야	796-19	답	1,425	1,425.0	광주광역시					
190	지야	796-17	답	1,773	1,773.0	광주광역시					
191	지야	796-16	답	180	180.0	광주광역시					
192	용전	1229-12	구	1,556	147.0	농림축산식 품부					
193	용전	1219-25	답	182	182.0	광주광역시					
194	용전	1219-27	답	348	348.0	광주광역시					
195	용전	1219-26	답	67	67.0	광주광역시					
196	용전	1219-23	답	1,877	1,877.0	광주광역시					
197	용전	1219-22	답	886	886.0	광주광역시					
198	용전	1229-43	구	107	107.0	농림축산식 품부					
199	용전	1229-28	도	182	144.0	농림축산식 품부					
200	용전	1220-29	답	52	52.0	광주광역시					
201	용전	1220-28	답	1,295	1,295.0	광주광역시					
202	용전	1220-26	답	1,056	1,056.0	광주광역시					
203	용전	1220-27	답	768	768.0	광주광역시					
204	용전	1220-25	답	30	30.0	광주광역시					
205	용전	1220-24	답	159	159.0	광주광역시					
<b>연번</b>	<b>동명</b>	<b>지번</b>	<b>지목</b>	<b>지적 (㎡)</b>	<b>면적 (㎡)</b>	<b>소유자</b>		<b>이해관계인</b>			<b>비고</b>
						<b>성명</b>	<b>주소</b>	<b>성명</b>	<b>주소</b>	<b>권리관계</b>	
206	용전	1229-10	구	1,167	128.0	농림축산식 품부					
207	용전	1221-17	답	550	550.0	광주광역시					
208	용전	1221-18	답	392	392.0	광주광역시					
209	용전	1221-16	답	1,499	1,499.0	광주광역시					
210	용전	1221-15	답	228	228.0	권종현	광주 북구 소해로 24-29 (일곡 동)	주 구 한국에보 트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21 (대치동, 삼탄빌딩)	근저당	
211	용전	1221-19	답	869	869.0	광주광역시					
212	용전	1229-31	구	168	111.0	농림축산식 품부					
213	용전	1221-14	답	6	6.0	광주광역시					
214	용전	1229-27	도	177	131.0	농림축산식 품부					
215	용전	1222-16	도	3,229	317.0	광주광역시					

-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우산근린공원)사업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21. 1. 15.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가.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30-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우산근린공원) 사업  
나. 명 칭 : 우산근린공원 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3. 사업규모

- 복합체육센터, 도로, 녹지 등

공 원 명	총 규 모	급회시행	비 고
우산근린공원	A=133,120㎡	A=4,942.4㎡	건고 24 * 75.2.18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나. 성 명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착수일) ~ 2022. 3. 31.(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관련조서 : 불임

※ 토지조서 불임, 관계 도면은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열람기간 : 2021. 1. 15. ~ 2021. 1. 29.(15일간)

8.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062-613-4431), 북구청 체육관광과(062-410-6150)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연번	등명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소 계				7,772	4,942.4						
1	우산동	221-3	담	983.0	170.8	공	광주광역시				
2	우산동	228-1	담	926.0	464.9	공	광주광역시				
3	우산동	228-2	담	939.0	360.0	공	광주광역시				
4	우산동	229	담	255.0	255.0	공	광주광역시				
5	우산동	229-1	담	826.0	554.3	공	광주광역시				
6	우산동	229-2	담	509.0	509.0	공	광주광역시				
7	우산동	229-3	담	664.0	664.0	공	광주광역시				
8	우산동	230-1	담	1,344.0	905.0	공	광주광역시				
9	우산동	230-4	대	132.0	20.4	공	광주광역시				
10	우산동	230-5	대	132.0	132.0	공	광주광역시				
11	우산동	230-11	담	1,062.0	907.0	공	광주광역시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상무1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공원번호	공원의 종류	공원의 명칭	면적(㎡)	위 치	비 고
179	생활권공원(어린이공원)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1,519.0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92번지 일원	

2. 공원지정(변경)현황

- 공원지정년월일 : 1994. 11. 12. (광주광역시 고시 제141호)
- 조성계획결정일 : 2011. 09. 07.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1-585호)
- 조성계획변경일 : 2012. 12. 12.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2-197호)

3.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 상무1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
- 공원지하공간의 주차장시설 결정에 맞추어 현 공원의 환경정비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여가, 휴식,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코자 함

4. 법적검토사항

- 공원시설률 : 당초(50.09%) → 변경(50.07%) (법정 60% 이하)
- 건 폐 율 : 당초(00.00%) → 변경(00.00%)

5.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부 지 면 적 (㎡)		건 축 규 모 (㎡)				비 고
	기 정	변 경	바 닷 면 적		연 면 적		
총 계	1,519.00	1,519.00	-	-	-	-	
공원시설	760.90	760.50	-	-	-	-	시설율:50.07%
도로 및 광장	524.90	416.90	-	-	-	-	(27.45%)
조경시설	-	-	-	-	-	-	
휴양시설	-	44.20	-	-	-	-	(2.91%)
유희시설	145.00	299.40	-	-	-	-	(19.71%)
운동시설	91.00	-	-	-	-	-	
관리시설	-	-	-	-	-	-	
녹 지	758.10	758.50	-	-	-	-	녹지율:49.93%

6.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7. 열람기간 : 2021. 01. 12. ~ 2021. 01. 25. (14일간)

8.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통지도과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지도과(☎062-350-40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 우리 구 덕남동 231-13번지 일원의 덕남새뜰마을사업 일환으로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류1호선, 소로3류3호선)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사전열람 공고하며,
- 「공의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15.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주 남구 덕남동 231-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덕남소3-1호선 외 1개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분	시설명	총규모	금회계획	비고
도로	덕남 소로3류1호선	L=248m, B=4.0m	L=248m, B=4.0m	
	덕남 소로3류3호선	L=91m, B=6.0m	L=48m, B=4.0m	

4. 사업의 시행자

- 주소 : 광주광역시 봉선로 1(주월동)
- 성명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도시재생과장)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6.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장소

- 열람기간 : 2021. 1. 15. ~ 2021. 1. 29.(14일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062-607-3952)

7.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로3-1	소로3-3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남구 덕남동	231-13	도	16.0	6.0	6.0	6.0	남*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35, 2동 807호			
2	남구 덕남동	230-2	전	8.0	8.0	8.0	8.0	전*신	서구 덕남동 174			
3	남구 덕남동	409-18	도	2,084.0	752.0	752.0	752.0	국유지	국(국토교통부)			
4	남구 덕남동	227-1	대	124.0	15.0	15.0	15.0	김*이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주도길 39-12			
5	남구 덕남동	223-1	대	407.0	47.0	47.0	47.0	김*성	광주 남구 덕남동 223	농**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불인로 120층정리1가 (쌍문동2차)	근저당
6	남구 덕남동	291-1	대	403.0	31.0	31.0	31.0	김*철	광주 남구 서동 9-6			
7	남구 덕남동	187-1	대	321.0	7.0	7.0	7.0	박*환	광주 서구 덕남동 187	농**농업협동조합	광주 서구 주월동 1264-5	근저당
8	남구 덕남동	188-2	대	420.0	4.0	4.0	4.0	전*숙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길로 27, 134동 103호			
9	남구 덕남동	188-1	대	420.0	2.0	2.0	2.0	전*숙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길로 27, 134동 103호			
10	남구 덕남동	189-1	대	245.0	5.0	5.0	5.0	신*주	광주시 서구 덕남동 189			
11	남구 덕남동	190-2	대	229.0	23.0	23.0	23.0	서**씨 신현공	광주 광산구 유계동 1057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m <sup>2</sup> )	편입면적(m <sup>2</sup> )		계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로3-1	소로3-3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2	남구 덕남동	191-1	전	48.0	48.0	48.0	48.0	문중서**씨 신현공	광주 광산구 유계동 1057			
13	남구 덕남동	195-2	대	397.0	8.0	8.0	8.0	월**건설회사 유한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19, 104동 2006호 (진월동, 한국아멜리올아파트)	월*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40번길 10 (월산동)	근저당
14	남구 덕남동	195-1	대	397.0	4.0	4.0	4.0	월**건설회사 유한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19, 104동 2006호 (진월동, 한국아멜리올아파트)	월*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40번길 10 (월산동)	근저당
15	남구 덕남동	196-1	대	198.0	4.0	4.0	4.0	김*현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627번길 19, 104동 2006호			
15	남구 덕남동	196-1	대	"	"	"	"	선*임	"	남**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09 (주월동(주월2차)정)	근저당
16	남구 덕남동	213-2	대	835.0	13.0	13.0	13.0	나*희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80번길 7, 107동 602호			
17	남구 덕남동	203-1	대	555.0	68.0	68.0	68.0	김*수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90-74(덕남동)			
18	남구 덕남동	106-9	담	50.0	3.0	3.0	3.0	공유지	광주광역시			
19	남구 덕남동	89-4	도	1,981.0	11.0	11.0	11.0	공유지	광주광역시 남구			
20	남구 덕남동	407-3	도	71.0	14.0	14.0	14.0	국유지	국토교통부			
21	남구 덕남동	406-6	구	185.0	28.0	28.0	28.0	국유지	국토교통부			
22	남구 덕남동	135-6	담	87.0	49.0	49.0	49.0	김*생	광주 남구 덕남동 171			
23	남구 덕남동	136-3	전	97.0	66.0	66.0	66.0	김*열	광주 남구 덕남동 171	남**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69(주월동) (광주지정)	근저당
24	남구 덕남동	137-4	전	101.0	53.0	53.0	53.0	김*호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59번길 12, 202동 1003호			
25	남구 덕남동	409-25	도	77.0	18.0	18.0	18.0	국유지	국토교통부			
26	남구 덕남동	149-2	담	118.0	13.0	13.0	13.0	박*자	광주 북구 신일로32번길 46(신안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21-63호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광주도시계획시설사업인 광산구 송정동 1007-4번지 주변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1. 1. 15.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00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명칭 : 광주송정역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규모 : 주차장 1개소

시설명	위치	면적(㎡)	주차대수	비고
송정역 뒤 주차장	송정동 1007-4번지 일원	1,792	52면	광산구 고시 제2019-102호 (실시계획인가) 광주도시계획시설 (주차장)사업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송정동)
- 성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 수 : 2020. 8. 18.
- 준 공 일 : 2020. 12. 23.

**6. 준공도서 : 게재생략(광산구청 교통지도과에 비치)**